

#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458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18. . 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,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, 안 제4조)
- 나.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(안 제5조)
- 다.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포상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라. 연합회 구성,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점검 등 (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)

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조
- 나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
## 4. 조 례 안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2018년 1회 추경 편성, 비용추계서 반영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개선의견 반영
- 라. 입법예고: 2018. 5. 21. ~ 6. 11.(의견없음)

#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,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착한 가격업소”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·품질·위생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5조(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
2.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
3. 영업장 위생·청결 기준
4. 종사자 친절도 기준
5.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
2. 최근 3년 내 위법행위를 하여 보건소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3.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
4.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착한 가격업소 지원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교부
2.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
3.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
4.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
5.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·보조
6.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포상)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연합회 구성 등) 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 (이하 “연합회”라고 한다)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연합회에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)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고,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
2. 착한 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
3.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
4.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·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10조(운영현황 점검 등) 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근거법규

##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1 (제8조 관련)

[별표 1] <개정 2016.3.25.>

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8조 관련)

| 구분                | 시·도사무  | 시·군·자치구사무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차.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| 1) 소비자보호시책 수립<br>2)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·추진<br>3) 소비자 계몽과 교육<br>4)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·운영<br>5)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·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<br>6)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<br>7)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<br>8)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| 1) <u>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·시행</u><br>2)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·관리<br>3) 물가지도 단속<br>4) 소비자 계몽과 교육<br>5)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·관리<br>6)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<br>7)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|

##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“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 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.

1.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
2. 그 밖의 업종: 5명 미만



# 울산광역시 중구



수신 경제일자리과장  
(경유)

##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(중구 착한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)

1. 경제일자리과-35285(2018.5.17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결과를 통보하오니, 그 반영계획서를 **2018.6.8.(금)까지**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▣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(GIA 시스템)

- 가. 나의페이지 > 나의할일 > 분석평가대기 > 나의과제 -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[통보(개선)] 클릭
  - 나.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「반영계획서 작성」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
  - 다. 저장버튼 오른쪽의 기안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(분석평가서) 기안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결재 진행
- ※ 시스템 사용 문의 : GIA시스템 콜센터 (T. 1566-3287 또는 02-3789-4450)

붙임 : 검토의견 통보서 1부. 끝.

## 여성청소년과장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무관           | 여성가족계장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청소년과 전결 2018. 5. 23. 장       |
| 협조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행            | 여성청소년과-20476 (2018. 5. 23.) | 접수 경제일자리과-36814 (2018. 5. 23.) |
| 우 44475       |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, (복산동, 중구청) | / http://www.junggu.ulsan.kr   |
| 전화번호 290-4903 | 팩스번호 290-4909               | / youngaja@korea.kr / 대국민 공개   |

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! 당신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.

#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| 관리번호   | 2018A울산중구014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|---|
| 정책명  |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소관부서   | 기관명   | 울산광역시 중구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 | 부서명   | 경제일자리과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 | 담당자명  | 차연희   | 전화번호 052-290-3312 |       |   |   |   |
|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 | 2018년 5월 17일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주요 분석평가 내용<br>(경제일자리과)   | <p>본 조례 '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'에 대해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,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.</p> <p>제정의 주요내용은 가.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, 안 제4조), 나.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(안 제5조), 다.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포상(안 제6조, 안 제7조), 라. 연합회 구성,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점검 등(안 제8조, 안제9조, 안제10조) 등에 대한 내용임.</p> <p>물가모니터요원의 경우 남녀의 사회·문화적 경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, 또한 영업장 위생·청결 점검 시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는 여성모니터요원이,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는 남성모니터요원이 조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어 모니터요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함.</p>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종합 검토 의견<br>(분석평가책임관)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 | 제9조(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) ① 구청장은 물가 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고,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로 수정요함.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 | 구분  | 해당 내용<br>(제·개정 법령안)   | 개선안<br>(법령 수정안)   | 검토 사유 | 1 | 제9조(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) ① 구청장은 물가 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. | 제9조(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) ① 구청장은 물가 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고,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|
| 구분   | 해당 내용<br>(제·개정 법령안)   | 개선안<br>(법령 수정안)   | 검토 사유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1  | 제9조(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) ① 구청장은 물가 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.   | 제9조(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) ① 구청장은 물가 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고,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 | 2018년 6월 8일 까지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| <p>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>2018년 5월 23일</p> <p><b>울산광역시 중구 분석평가책임관</b></p> <p>(담당자/연락번호 : 유창영/052-290-4903)</p> <p>경제일자리과장 귀하</p> |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   |   |

[별첨1]

##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 -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(착한가격업소 지원)
  -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착한가격업소 표찰, 인센티브, 모니터링 활동비
-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 등 지원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| 연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2018년  | 2019년  | 2020년  | 2021년  | 2022년  | 합계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지출       | 착한가격업소<br>표찰 및 인센티브 | 3,750  | 3,750  | 4,000  | 4,000  | 4,000  | 19,500  |
|          | 모니터링 활동비            |        | 3,000  | 3,000  | 3,000  | 3,000  | 12,000  |
|          | 착한가격업소<br>지원       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200,000 |
|          | 소 계(a)              | 43,750 | 46,750 | 47,000 | 47,000 | 47,000 | 231,500 |
| 수입       | 시 비                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200,000 |
|          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| 3,750  | 6,750  | 7,000  | 7,000  | 7,000  | 31,500  |
|          | 소 계(b)              | 43,750 | 46,750 | 47,000 | 47,000 | 47,000 | 231,500 |
| 총비용(a-b) |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| 0      | 0      | 0      | 0      | 0       |

### 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(단위:천원)

| 구분 \ 연도 | 2018년  | 2019년  | 2020년  | 2021년  | 2022년  | 합계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시비     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200,000  |
| 구비      | 3,750  | 6,750  | 7,000  | 7,000  | 7,000  | 31,750   |
| 합계      | 43,750 | 46,750 | 47,000 | 47,000 | 47,000 | 231,7500 |

1. 부대의견 : 없음

2. 협의사항 :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
3. 작성자 :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차연희(290-3312)

#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

## 1. 부문별 재원분담계획

| 구분 \ 연도 |      | 2018년  | 2019년  | 2020년  | 2021년  | 2022년  | 합계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 시비      | 일반회계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200,000 |
|         | 구비   | 3,750  | 6,750  | 7,000  | 7,000  | 7,000  | 31,500  |
|         | 합계   | 43,750 | 46,750 | 47,000 | 47,000 | 47,000 | 231,500 |

2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및 구비

3. 부대의견 : 없음

4. 협의사항 :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
5. 작성자 :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차연희 (290-3312)